

#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2.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의대상은

- 토지매입이 7건에 48,199㎡ 1,531,389천원이고 건물 신축이 2건에 8,285㎡ 17,800,000천원임.

### 가. 토지 매입으로

- ① **땀띠 웰빙타운 조성사업 부지**, 3필 11,004㎡ 272,420천원(관광경제과)  
▷ 대화면 대화리 1152-1번지 외 2필지
- ② **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**, 1필 4,638㎡ 14,378천원(관광경제과)  
-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 사업 부지는 '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계획으로 심의 의결을 득하였고, 당초 취득 부지인 “노동리 71번지와 5필 7,891㎡”에 **노동리 69-2번지 4,638㎡를 추가 매입**하고자 함.
- ③ **봉평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**, 2필 3,468㎡ 253,906천원(관광경제과)  
▷ 봉평면 창동리 412번지 외 1필지
- ④ **진부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**, 4필 1,684㎡ 567,516천원(관광경제과)  
▷ 진부면 하진부리 206-15번지 외 3필지

- ⑤ **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사업 부지**, 4필 14,835m<sup>2</sup> 37,802천원(산림과)
  - ▷ 봉평면 무이리 산78-2 외 3필지
- ⑥ **봉평면 태봉정 궁도장이전 부지**, 5필 10,480m<sup>2</sup> 198,103천원(문화체육과)
  - ▷ 봉평면 원길리 296-1번지 외 4필지
- ⑦ **미탄면 체육관 건립 부지**, 1필 2,090m<sup>2</sup> 187,264천원(문화체육과)
  - ▷ 미탄면 창리 781-6번지

#### 나. 건물 신축으로

- ① **물구비 권역회관**, 상안미리 1185-5 531m<sup>2</sup> 1,100,000천원(농축산과)
- ② **평창 국민체육센터**, 종부리 산64-9 7,754m<sup>2</sup> 16,700,000천원(문화체육과)

### 3. 첨부자료

- 가.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목록
- 다. 관계법령 발췌서 1부.
- 라. 토지대장 열람조서 1부(별송).
- 마. 사업계획서 각 1부(별송).

# 관계법령 발취

##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

제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중요재산의 취득**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**처분**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 <개정 2008.4.18, 2008.12.31>

1.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, 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있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)로 하고, 건물,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
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재산